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5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문진석 · 김기표

박지원 · 김영환 · 서삼석

남인순 · 서영석 · 이수진

오세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·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사무직원의 복무의 관한 사항이 각 학교법인의 재량에 맡겨짐에 따라 학교마다 기준이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,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의 직원에 비하여 육아휴직 등 복무 관계에서 불리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.

그러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이나 국공립학교의 직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으므로, 복무 및 이에 따른 보수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하여 교원의 휴직

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,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무 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0조의2제3항 및 제70조의8 신설).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원의 휴직에 관해서는 제59조제1항제1호·제7호·제7호의2·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·제3항을 준용한다.
이 경우 “교원”은 “사무직원”으로 본다.

제7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0조의8(국가 등의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휴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) 제7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의2(사무기구 및 직원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0조의2(사무기구 및 직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원의 휴직에 관해서는 제59조 제1항제1호·제7호·제7호의2 ·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·제 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교 원”은 “사무직원”으로 본다. <u>제70조의8(국가 등의 지원) 국가</u> <u>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</u> <u>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제70조</u> <u>의2제3항에 따른 휴직에 소요</u> <u>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</u> <u>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바에 따라 그 부족액을 지원할</u> <u>수 있다.</u>
<u><신설></u>	